

<http://dx.doi.org/10.17703/JCCT.2022.8.3.323>

JCCT 2022-5-40

경제방첩 법제의 개선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Regulations on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김 호*

Ho Kim*

요약 경제방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으나 법문의 명확한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제방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우리 법은 경제방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방첩업무규정의 범문과 개별법령 및 미국법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경제방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첩기관의 협조요청권을 강화하는 법개정 또는 자료획득을 위한 별도의 허가절차를 도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방첩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외국세력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주요어 : 경제방첩, 경제스파이, 방첩, 영업비밀, 산업기술

Abstract Althoug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has been amended consider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a clear interpretation of certain provisions and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are required. This article presents some suggestions for regulations on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Firstly, the meaning of the term “disturbance of economic order in connection with foreign powers” will become clear by interpreting it with the terms of the Counterintelligence Duty Regulation and by setting categories referring to the U. S. regulations. Secondly, counterintelligence authorities' request for cooperation may be reinforced by amending relevant regulations or by applying a special procedure for the acquisition of data. Finally, strengthened punishment for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foreign powers may improve the efficiency of counterintelligence.

Key words :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Economic Espionage, Counterintelligence, Trade Secret, Industrial Technology

I. 서론

과거 냉전시대의 방첩은 아국의 국가안보에 반하는 적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대응이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냉전 종식 후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현재의 방첩은 국가안보에 반하는 적국의 활동뿐만 아니라 경제안보와 이익에 반하는 외국의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정회원,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제1저자)

접수일: 2022년 4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5월 6일

게재확정일: 2022년 5월 9일

Received: April 30, 2022 / Revised: May 6, 2022

Accepted: May 9, 2022

*Corresponding Author: hufsho@kmu.ac.kr

Major in International Commerce, Keimyung Univ, Korea

따라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여 그동안 국내정보활동으로 간주되던 방첩의 제한을 없애고 외국세력의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경제방첩활동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경제방첩과 관련하여 동법 개정시 신설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의 정의가 없어 해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경제방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인식 하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관련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본 논문은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법규정에 기초하여 경제방첩의 의미를 파악하고 미국의 경제방첩법제를 개관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한다.

II. 선행연구 요약

경제방첩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각국 방첩법제의 비교, 방첩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의 내용과 침해시 구제방안, 영업비밀 및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등 형사법적 대처방안, 영업비밀 및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영업비밀 및 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법제의 개정, 방첩활동 관련 법제와 직무에 관한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각국 방첩법제의 비교연구는 영업비밀과 경제스파이를 규율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법제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주된 내용이고[1], 방첩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및 기술 침해의 내용과 침해시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령상의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의 해석에 관한 법적 기준을 이론적으로 구명하고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의 구제방안을 탐구하고 있다[2]. 다른 한편으로, 영업비밀 및 기술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 대신 침해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을 통한 침해행위 방지라는 형사법적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연구도 있다[3]. 영업비밀 및 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정책 프로그램 운영, 민관 협력,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제도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4], 영업비밀 및 기술 침해행위에 관한 법제의 개정에 관한 연구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미국 경제스파이법의

내용을 도입하여 개정하거나 경제스파이법을 제정하거나, 외국인 투자 규제를 위하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주장하는 연구가 있다[5]. 방첩활동 관련 법제와 직무에 관한 연구는 방첩활동의 근거법령 및 방첩직무수행권한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6].

위의 선행연구결과는 주로 방첩법제의 비교법적 분석, 경제방첩이 요구되는 비밀 및 기술침해와 이에 대한 대응, 외국을 위한 경제스파이 활동의 처벌을 위한 법개정을 논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가 다루지 않은 문제인 경제방첩 근거규정의 불명확한 문구의 의미를 해석하고 경제방첩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III. 경제방첩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방첩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 직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 방첩의 범위에는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방첩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방첩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 개정 전에는 방첩이 “국내보안정보”의 한 분야로 간주되어 방첩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경제방첩에 관하여는 규율의 근거가 미비하였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동 조항 개정시 “국내보안정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을 추가함으로써 국내외에서 적극적인 경제방첩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의 정의가 없어 이 방첩활동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방첩의 정의 및 방첩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법의 하위법령인 방첩업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방첩업무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방첩이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이하 “외국등”이라 한다)의 정보활동을 찾아내고 그 정보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하여 하는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모든 대응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어 동 규정 제2조 제2호에서는 “외국등의 정보활동”이란 외국등의 정보 수집활동과 그 밖의

활동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첩업무규정 또한 방첩활동의 대상을 개정 전에는 외국 정부·단체 또는 외국인이 직접 하거나 내국인을 이용하여 하는 정보 수집활동에 제한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외국등의 정보활동으로 확대하여 방첩활동의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국가정보원법은 개정을 통하여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를 예시규정으로 방첩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방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볼 것인바, 국가정보원법과 방첩업무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에서 경제방첩이란 경제안보와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외국등의 정보 수집 및 기타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기 위한 모든 대응활동으로서 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대응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산업경제정보 유출 등은 예시규정이므로 이 외에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외국등의 활동은 모두 경제방첩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V. 미국의 경제방첩법제와 방첩목표

1. 경제방첩법제

미국의 방첩활동은 연방법전인 U.S. Code의 Title 50의 여러 섹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그 중 주요한 법으로는 National Security Act of 1947,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를 들 수 있다.

National Security Act는 미국 방첩활동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으며 1947년 제정된 이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정보·방첩활동에 대한 정의는 National Security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정보(intelligence)는 해외정보(foreign intelligence)와 방첩(counterintelligence)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해외정보란 외국정부 및 기관, 외국조직, 외국인, 국제 테러리스트조직과 그들의 활동 능력·의도·활동에 관한 첩보(information)를 의미하고, 방첩이란 외국정부 및 기관, 외국조직, 외국인, 국제 테러리스트조직이 수행하였거나 그들을 위해 활동한 스파이, 기타 정보활동, 파괴

또는 암살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집된 첩보 및 수행된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국가안보에 관한 정보(intelligence related to national security)란, 모든 정보원로부터 유래한 정보로서 미국 국내외에서 수집된 첩보를 포함하며 미국 정부기관과 연관되어 있고 미국, 미국민, 미국의 재산 및 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는 정보, 대량파괴무기의 개발, 확산, 사용을 포함하는 정보, 기타 미국도 안보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50 U.S. Code § 3003). 한편, 미국법에서는 국제테러와 관련된 그룹, 대량살상무기의 국제적 확산에 관련된 단체를 외국세력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50 U.S. Code § 1801), U.S. National Intelligence: An Overview 2011에 의하면 미국의 정보활동에 “미국에 대한 적대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행위의 수행”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7], 이는 방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문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방첩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미국에 대한 적대활동”으로 보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결국 위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미국법상 방첩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주체에는 외국, 국제테러리스트 외에 대량살상무기 확산세력 등 초국가행위자가 포함될 여지가 있고, 스파이, 기타 정보활동, 파괴 또는 암살행위는 방첩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 미국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적대활동의 예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은 미국의 기술 등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1996년 제정되었으며, 외국정부 또는 미국내 기업이나 종업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경제스파이법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외국의 관련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첫번째 유형인 경제스파이는 외국정부 등을 이롭게 할 것을 의도하거나 알면서 영업비밀을 절도, 은닉, 취득, 복사, 촬영, 다운로드, 파괴, 수령,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8 U.S. Code § 1831). 영업비밀 침해의 두 번째 유형인 영업비밀 절도는 외국정부 등을 이롭게 할 것을 묻지 않고 영업비밀 소유권자에게 피해를 줄 것을 의도하거나 알면서 영업비밀 소유권자 외의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절도, 은닉, 취득, 복사, 촬영, 수령,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8 U.S. Code § 1832).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중 경제스파이 행위는 방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경제스파이 행위의 경우 외국정부 등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스파이 혐의를 받던

사건이 영업비밀 절도사건으로 소추되는 경우도 있다 [8].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은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정보가 미국기업의 인수 등을 통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내 외국인 투자를 정부기관인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CFIUS)가 검사 및 통제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러한 CFIUS의 권한은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에 Section 721을 신설하는 개정인 이른바 Exon-Florio amendment of 1988에 의해 처음으로 부여되었다. 이후 Section 721은 Foreign Investment and National Security Act of 2007(FINSA)와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FIRRMA)를 통하여 CFIUS의 권한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50 U.S. Code § 4565). 즉, FIRRMA는 CFIUS가 특정산업에 대한 경영권 획득을 수반하지 않는 외국인투자 및 미국의 중요 인프라, 특정지역, 군사 시설 등에 인접한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권리취득에 대하여 심사 및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미국의 방첩목표

미국은 각 분야별로 다수의 정보기관이 존재하며,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ODNI)가 이를 총괄, 조정하고 있다. ODNI는 미국의 정보전략인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2019를 수립, 발표하였으며, 여기에서는 미국 정보기구의 임무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방첩도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이 중 경제방첩에 관하여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해 외국 정보기관 및 내부자로부터의 위협을 추적, 이해, 저지, 파괴, 방어하는 것을 방첩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9]. 한편, ODNI 산하의 국가방첩보안센터(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 NCSC)가 발표한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2020-2022에서는 (1)미국내 해외정보활동의 식별, 평가, 무력화, (2)내부자로부터의 위협 완화, 해외정보기관의 스파이, 암살시도에 대응, (3)기술침투 또는 스파이 활동으로부터 미국의 민감·비밀정보 보호를 방첩활동의 핵심임무로 명시하고 있다[10].

V.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제언

1. 방첩업무규정: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의 의미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첩의 대상이 되는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의 의미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방첩법령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문제이므로, 방첩업무규정 또는 하위법령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관한 연구가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법규정에 기초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먼저, “해외연계”에 대해서는 방첩활동이 외국등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방첩법령의 “외국등”에서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해외연계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연계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외국세력이 경제질서 교란을 실질적으로 조종 및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경제질서 교란자가 내국인이더라도 외국세력이 배후에서 경제질서 교란을 실질적으로 조종 및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으로서 방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편, “경제질서 교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질서”의 해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시장경제질서 및 국가의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질서 교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령도 존재하는 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는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을, 관세법 시행령 제136조는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을 각각 경제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취업제한 등을 통해 경제질서를 확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결국 “경제질서 교란”이란 헌법상의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기초하여 성립한 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법령의 “경제질서 교란”을 추출하여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방첩업무규정의 정의조항에 “경제질서 교란”을 신설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질서 교란”의 의미와 관련하여, 미국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2020-2022에서 설정하고 있는 방첩의 핵심임무 수행을 위한 전략목표에서 방첩의

대상이 되는 경제질서 교란행위의 구체적 범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해외정보기관이 목표로 삼는 핵심분야이므로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동 전략에서 설정하고 있는 미국방첩의 목표는 (1)핵심기반시설 보호, (2)미국의 공급사슬에 대한 위협 축소, (3)미국경제 착취에 대한 대응, (4)미국의 민주주의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 (5)해외 정보기관의 사이버 작전 및 기술작전에 대한 대응이다[11]. 또한 동 전략은 각각의 목표를 위해 방첩기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12]. 위의 방첩목표 중 경제질서와 관련된 것은 (1) ~ (3)이다. 동 전략은 (1)핵심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수행할 임무로서 1)타 정부기관, 민간분야, 동맹과 핵심기반시설에 관한 정보교류 확대, 2)범정부적으로 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위협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개발, 육성, 보유, 3)위협정보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격 및 방어작전을 가능케 하는 분석기법 개발을 제시하고 있다. (2)미국의 공급사슬에 대한 위협 축소를 위해 수행할 임무로서는 1)공급사슬에 대한 위협을 추적하고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국가경제안보위협이 되는 의심·고위험 공급자·상품·소프트웨어·서비스 식별절차 시행), 2)연방정부차원에서 공급사슬 통합보안 강화(공급사슬위험관리절차를 연방정부 사업에 통합 적용하여 민간으로부터 공급받은 기술 및 서비스 보호, 조달업무에 공급사슬위험평가를 도입하여 고위험 공급자 배제), 3)공급사슬위협, 위협관리, 우수사례에 관한 지원활동 강화(타 기관, 분야와의 파트너십 강화, 핵심기반시설분야와 공급사슬위협정보 및 위협완화방법을 공유)를 제시하고 있다. (3)미국경제 착취에 대한 대응을 위해 수행할 임무로서 1)미국의 혁신기반에 대한 해외위협 추적 강화, 2)미국경제에 대한 해외정보위협에 대한 인식 확장, 3)미국의 국가안보위협이 되는 미국에 대한 해외투자를 식별하고 이에 대응함(민간분야와 협력하여 해외투자 추적절차를 개발하고, 해외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방첩문제를 이해·공유·완화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미국 방첩전략의 목표와 임무를 우리의 “경제질서 교란”에 다음과 같이 적절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핵심기반시설 교란

금융전산망 해킹, 정보통신망·통신망 파괴

2) 공급사슬에 대한 위협

재화의 매점매석, 공급사슬 파괴(수출입규제), 고위험 물품·서비스·소프트웨어 공급

3) 우리나라 경제 착취

우리의 경쟁력이 우수한 산업분야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영업비밀 절도

4) 기타 경제질서 교란

불법·탈법 통한 주식시장 교란, 불법·탈법 통한 외환시장 교란, 통화위조, 조세회피처·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불법·탈법적인 자본유출입(자금세탁, 조세포탈, 불법 자본유출), 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조세포탈·불법 자본유출

2. 경제방첩활동 수행 내실화: 협조요청권 및 허가

경제방첩의 대상인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의 의미 명확화 다음으로, 경제방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행 법령상 협조요청에 의한 경제방첩활동이 가능하지만, 제한요소가 많아 방첩활동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 역시 아직 미진하므로 이하에서는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현행 협조요청권의 내실화 및 경제방첩활동에 대한 별도의 허가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방첩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부기관 및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다. 미국법에서는 전자감시를 통하여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첩보를 획득하려는 연방관리는 국가안보문제를 수사하거나 국가안보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른 법집행관리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0 U.S. Code § 1806(k)). 현재 국가정보원법 제5조에서도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첩기관의 협조요청권은 개별법령상의 정보제한규정에 의해 정보접근의 실효성이 제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국제기본법 제81조의13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방첩기관의 방첩활동은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방첩활동을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개별법령의 협조사유에 방첩활동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국법에서는 범죄수사의 일부로서 획득한 해외정보, 방첩,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첩보는 법집행, 정보, 이민, 국방,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연방관리의 공무수행을 위해 적법하게 공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받은 연방관리는 그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50 U.S. Code § 3365), 우리도 이를 참고하여 국가정보원법 제5조를 개정하여 협조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방첩활동을 위한 별도의 허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법은 전자감시를 하려는 경우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고 발급받아 전자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50 U.S. Code §§ 1804-1805), FBI는 외국의 정보활동에 대한 첩보 획득을 위한 또는 국제테러 및 비밀정보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를 위해 물품제출명령(도서, 기록, 서류, 문서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50 U.S. Code § 1861), 이는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로서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법원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서면 승인을 받아 검열, 감청의 방법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32조 등에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경제방첩활동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명령을 받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스파이법 제정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스파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규제 및 처벌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보호 대상인 영업비밀의 범위를 경영상 영업비밀로 확대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범위를 취득, 사용으로 확대하였으며, 미수와 예비·음모까지 처벌대상을 확대하였고, 소송과정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미국 경제스파이법의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 들여 영업비밀 보호에 일조하고 있으나, 외국 및 외국세력에 의한 경제스파이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기에는 부족하다[1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정확히 하고 기술유출의 대상 및 주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14].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처럼 외국정부 등을 이롭게 할 것을 의도하거나 알면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15].

VI. 결 론

본 논문은 경제방첩법령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법은 경제방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외연계 경제질서교란”을 규정하였으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바, 방첩업무규정의 법문과 개별법령 및 미국법을 참고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둘째, 경제방첩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방첩기관의 협조요청권을 강화하는 법개정 또는 자료획득을 위한 허가절차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방첩활동의 효과를 배가하기 위해 외국세력이 주도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References

- [1] Y. C. Baek, and H. I. Hwang, “A Study on the Trade Secrets Protection: Centering on Japan,” *Journal of Law and Politics Research*, Vol. 18, No. 4, pp. 83-104, December 2018; W. Chung,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Economic Counterintelligence in Principal Countries,” *Journal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Vol. 5, No. 2, pp. 7-42, 2013; J. H. Yoon, “Comparative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against Industrial Espionage,” *Dankook Law Riview*, Vol. 41, No. 1, pp. 303-320, March 2017; J. H. Yoon, “Recent Trends of Court’s Decisions and Legislation on Economic Espionage in the United States,” *Kangwon Law Review*, Vol. 44, pp. 477-501, February 2015.
- [2] S. M. Baek,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according to the Change of Trade Secret Requirements: Focus on maintenance of Secrecy,” *Jeonbuk Law Review*, Vol. 63, pp. 321-342, September 2020; Y. T. Chun, and H. S. Kim, “The Policy Issues and Prospects on the Discipline of Unfair Use of Trade Secrets Focused on the

-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Law Review*, Vol. 19, No. 2, pp. 437-465, June 2019; G. H. Lee, and S. B. Baek, “A Study on Requirements of Objects of Trade Secret and Maintenance of Its Secrecy,” *Chung-Ang Law Review*, Vol. 22, No. 1, pp. 7-47, March 2020; K. M. Lee, “A Comparative Study on Confidentiality Management as a Requirement for Trade Secrets: Focusing on U.S. and Japanese laws and precedents,” *Legal Theory and Practice Review*, Vol. 8, No. 1, pp. 321-344, February 2020; S. W. Son, S. M. Moon, and J. H. Park, “Effective Remedy against Trade Secret Infringement: Focused on ‘Rational Secret Management Standard’ and ‘Civil Remedy,’” *Northeast Asian Law Journal*, Vol. 11, No. 2, pp. 345-381, September 2017.
- [3] H. G. Kim, and C. M. Lee,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Espionage Charges for the Industrial Technology Divulgence,” *Korean Security Journal*, No. 57, pp. 253-276, December 2018; G. S. Lee, “A Study on the Preventing Policy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Leak Crime: focused on the criminal aspect of the United State’s Economic Espionage Act,”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 9, No. 2, pp. 109-163, April 2009.
- [4] J. H. Choi,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Directions of Industrial Security Programs: Focused upon Policies and Practices in the U.S.,” *Korean Security Journal*, No. 22, pp. 197-230, March 2010.
- [5] H. W. Han, “A Study On the U.S.A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Focusing on the Legal Understanding and It’s Management,”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No. 34, pp. 162-198, March 2012; H. J.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 of Espionage Activities and the Issue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Laws,” *Journal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Vol. 2, No. 2, pp. 125-180, 2009; J. B. Kim, “Economic Espionage Act in USA,” *Chungnam Law Review*, Vol. 12, No. 1, pp. 183-204, December 2001; S. J. Kim, W. H. Kim, and Y. S. Yi,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Law for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Focusing on international M&A,” *Korean Security Journal*, No. 29, pp. 7-34, December 2011; Y. J. Kim, “A Study on the Review and Implication of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United States,” *KNU Law Journal*, No. 70, pp. 305-335, July 2020.
- [6] H. J. Kim, “Research on the Legal Ground and Authority of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toward Foreigners by Intelligence Investigative Agency,” *Journal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Vol. 8, No. 1, pp. 7-42, June 2015.
- [7]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U.S. National Intelligence: An Overview 2011,” U. S. Government, p. 8, <https://www.ojp.gov/ncjrs/virtual-library/abstracts/us-national-intelligence-overview-2011>.
- [8]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Economic Espionage” <https://www.fbi.gov/news/stories/economic-espionage>.
- [9]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2019,” U. S. Government, p. 14, https://www.dni.gov/files/ODNI/documents/National_Intelligence_Strategy_2019.pdf.
- [10]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2020-2022,” U. S. Government, p. iii, https://www.dni.gov/files/NCSC/documents/features/20200205-National_CI_Strategy_2020_2022.pdf.
- [11]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2020-2022,” U. S. Government, p. 5, https://www.dni.gov/files/NCSC/documents/features/20200205-National_CI_Strategy_2020_2022.pdf.
- [12]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Center,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Strategy 2020-2022,” U. S. Government, pp. 6-10, https://www.dni.gov/files/NCSC/documents/features/20200205-National_CI_Strategy_2020_2022.pdf.
- [13] H. J. Kim,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 of Espionage Activities and the Issue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Laws,” *Journal of National Intelligence Studies*, Vol. 2, No. 2, p. 172, 2009.
- [14] S. W. Son, and J. H. Park, “Modification of Legal System for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Dankook Law Riview*, Vol. 37, No. 4, p. 503, December 2013.
- [15] H. W. Han, “A Study On the U.S.A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Focusing on the Legal Understanding and It’s Management,”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No. 34, p. 191, March 2012.